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임시운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일몰 조항이 미설정되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신설(부령 제157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7조2에 동규칙 제26조의3(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 사항 등 보고)에 대한 재검토 기한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157조2(규제의 재검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 사항 등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u><신 설></u>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 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 사항 등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 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